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3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도로명 주소의 시행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소재지 주소를 일괄개정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소속 행정기관의 위치에 관하여 도로명 주소로 개정

- 농업기술센터 : 여만리 357-6번지 ⇒ 여만길 46
- 상하수도사업소 : 하리 210-2번지 ⇒ 군청길 77
-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 : 별표 1
- 방림계촌출장소 : 별표 2

나. 다른 조례의 개정(안 부칙 제2조)

- 평창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
 - 평창읍하리 210-2번지 ⇒ 평창읍 군청길 77
- 평창군 읍·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: 별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붙임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 없음
- 라. 입 법 예 고 : 2011. 12. 7 ~ 12. 27 (21일간), 제출된 의견없음.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바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붙임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여만리 357-6번지”를 “여만길 46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하리 210-2번지”를 “군청길 77”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평창군청위치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청의위치에관한조례”를 “평창군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”로 하고, 제2조 중 “평창읍 하리 210-2번지”를 “평창읍 군청길 77”로 한다.

② 평창군읍·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읍·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”를 “평창군 읍·면사무소

소재지에 관한 조례”로 하고, 제2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읍면별	소재지	비고
평창읍사무소	평창읍 노성로 127	
미탄면사무소	미탄면 청옥산1길 1	
방림면사무소	방림면 서동로 1337	
대화면사무소	대화면 남산1길 28	
봉평면사무소	봉평면 기풍4길 10	
용평면사무소	용평면 경강로 2027	
진부면사무소	진부면 석두산2길 13	
대관령면사무소	대관령면 대관령로 83	

[별표 1]

보건의료원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

(제4조 관련)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평창군보건의료원	평창읍 중부로 61	평창군일원
미탄보건지소	미탄면 미탄문화길 37	미탄면 일원
방림보건지소	방림면 방림1길 14	방림면 일원
대화보건지소	대화면 남산1길 36	대화면 일원
봉평보건지소	봉평면 기풍8길 32-4	봉평면 일원
용평보건지소	용평면 갈정지길 8	용평면 일원
진부보건지소	진부면 석두로 12-6	진부면 일원
대관령보건지소	대관령면 대관령로 63	대관령면 일원
고길보건진료소	평창읍 고길천4길 13-15	고길리, 노론리, 조동리, 이곡리, 지동리, 상리
다수보건진료소	평창읍 숫돌고개길 16	임하리, 뇌운리, 계장리, 하일리, 다수리, 원당리
도돈보건진료소	평창읍 평창강로 854	마지1,2리, 천동리, 도돈리, 응암리, 대상리, 대하리
계촌보건진료소	방림면 운지로 294-14	계촌1,2,3,4,5,6리, 운교1,2리
하안미보건진료소	대화면 동천길 91	하안미2,3,4,5,6리
개수보건진료소	대화면 금당계곡로 832	개수1,2리, 상안미 1,2리
신리보건진료소	대화면 고토곡길 4	신1,2,3,4,5리
면은보건진료소	봉평면 진조길 14	면은1,2리, 진조리, 유포2리, 무이2리
등매보건진료소	봉평면 금당계곡로 1777-9	유포1,3리, 재산2리, 백옥포1,2리
속사보건진료소	용평면 양지길 10	속사1,2리, 노동리, 이목정1,2리
두일보건진료소	진부면 방아다리로 338-3	두일리, 척천리, 탑동리, 상진부2리
거문보건진료소	진부면 거문길 13-3	상월오개1,2리, 신기리, 거문리, 마평1리, 봉산리
수향보건진료소	진부면 오대천로 924	마평2리, 화의리, 장전리, 막동리, 수향리
유천보건진료소	대관령면 전나무길 8	유천1,2,3리, 병내리, 간평1리
용산보건진료소	대관령면 큰터길 21	용산1,2리, 수하리, 차항1리

[별표2]

출장소 위치 및 관할구역

(제17조 관련)

출장소명	위 치	관할구역
방림면 계촌출장소	평창군 방림면 계촌길 101	방림면 계촌1,2,3,4,5,6리 운교리 1,2,3리 일원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설치) ① (생 략)</p> <p>② 센터의 위치는 평창군 평창읍 <u>여만리 357-6번지</u>에 둔다.</p> <p>제11조(설치) ① (생 략)</p> <p>② 사업소의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<u>하리 210-2번지</u>에 둔다.</p>	<p>제7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여만길 46</u>-----.</p> <p>제11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군청길 77</u> -----.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
연락처	(033) 330 -2210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(이하생략)

②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(생략)

④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